

전화번호 거짓표시 검사 주요 위반사례집

2023.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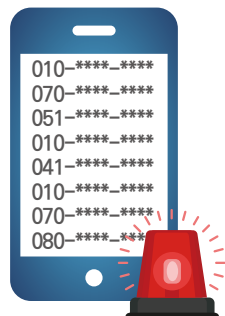


한국인터넷진흥원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전화

사례1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위반	06
세부①	가입자와 다른 명의자로 발신번호 변경	06
세부②	착신 미설정 대표번호·착신과금서비스번호를 발신번호로 변경	08
세부③	통신사가 자사용으로 개통한 전화번호를 가입자의 발신번호로 변경	10
세부④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070번호를 미부여	12
세부⑤	정당한 사유 외, 발신번호를 휴대 전화번호로 변경	14
사례2	번호 변경 위반	16
세부①	기 계약된 가입자 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	16
세부②	가입자 번호 변경 시 신청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미보관	18
사례3	KISA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전화번호 미차단	20
사례4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등 서류 발급 미흡	22
세부①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미흡	22
세부②	이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서류 발송	24
세부③	발급자 정보 누락	26



문자

사례1	발신번호 사전등록 미조치	30
세부①	인터넷문자발송사이트에서 발신번호 사전등록 없이 서비스 제공	30
세부②	자격을 상실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대상 미조치	32
세부③	자격 없는 가입자를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처리	34
사례2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 미흡	36
사례3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 본인확인 미흡	38
세부①	명의자가 다른 발신번호를 등록 승인	38
세부②	법인·단체 가입자와 발신번호 명의자가 다름에도 발신번호 등록	40
세부③	본인확인의 유효성이 없는 인증 수단으로 발신번호 등록	42
세부④	사설문자발송장비 운영담당자에 의한 발신번호 등록	44
세부⑤	문자 발송 업무 위임 시 사전 승낙 여부 확인 미흡	46
사례4	KISA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전화번호 미차단	48
사례5	증빙자료 미관리	50
세부①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 증빙자료 미보관	50
세부②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 본인확인 증빙자료 미보관	52
세부③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처리 시 증빙자료 미보관	54
사례6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미삽입	56

공통

사례1	국제전화 식별번호 미표시	60
사례2	거짓표시 전화번호 신고 처리 위반	62
세부①	KISA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건 미처리	62
세부②	KISA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된 해당 회선 미중지	64
세부③	KISA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수된 변작처리 답변 미제출	66
세부④	KISA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한 답변처리 미흡	68



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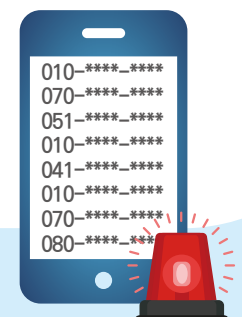
사례1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위반

사례2 번호 변경 위반

사례3 KISA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전화번호 미차단

사례4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등 서류 발급 미흡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사례
1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위반

세부 ① 가입자와 다른 명의자로 발신번호 변경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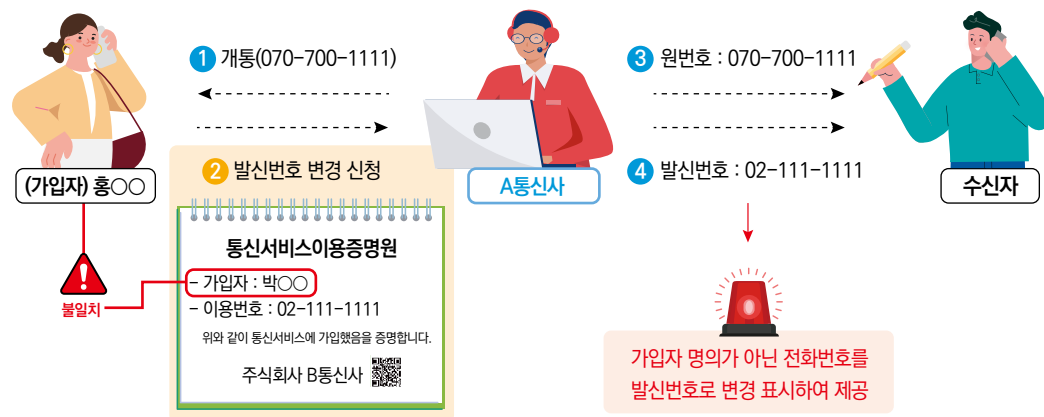
인터넷전화 사업자인 A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인 홍○○로부터 A통신사에서 개통한 인터넷전화(070-700-1111)의 발신번호를 02-111-1111로 변경한다는 신청을 받았다. 이에 A통신사는 가입자 홍○○로부터 변경하고자 하는 전화번호(02-111-1111)의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수령하여 발신번호 변경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현장검사 결과 홍○○가 제출한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02-111-1111)상의 명의자는 박○○로, 가입자인 홍○○와 발신번호 명의자인 박○○가 다름에도 발신번호 변경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발신번호 변경 시에는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가입한 유선전화(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가입자 홍○○의 명의가 아닌 타인(박○○)의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경을 승인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 ① 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사례 1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위반

세부 ②

착신 미설정 대표번호·착신과금서비스번호를 발신번호로 변경

가 | 검사사례

인터넷전화 사업자인 A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인 홍○○로부터 A통신사에서 개통한 인터넷전화(070-700-1111, 070-700-1112)의 발신번호를 대표번호(1588-1111)와 착신과금서비스번호(080-111-1234)로 발신번호 변경 신청을 받았다.

이에 A통신사는 가입자 홍○○로부터 두 번호의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수령하여 발신번호 변경을 승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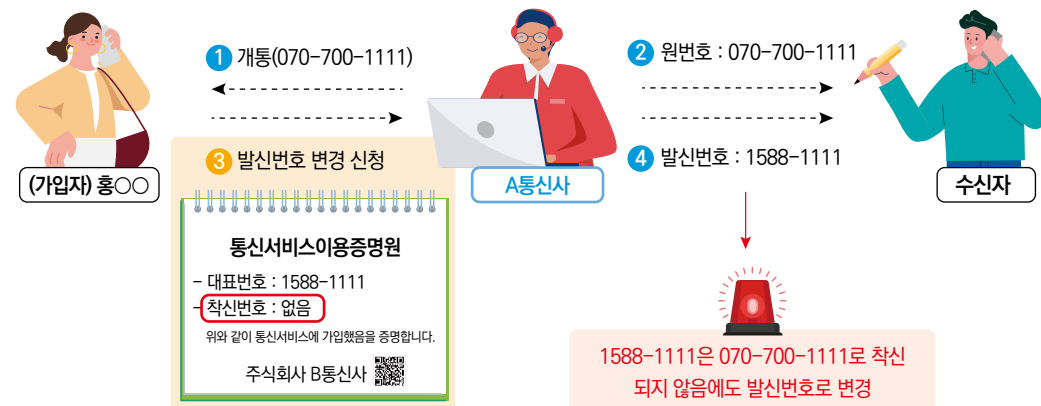
그러나 현장검사 결과 가입자 홍○○가 제출한 두 번호의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상에는 연결된 착신 번호가 없음에도 발신번호 변경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발신번호 변경 시에는 착신과금서비스, 대표번호서비스에 연결 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대표번호·착신과금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070-700-1111의 발신번호인 대표번호 1588-1111에 착신번호가 070-700-1111로 설정되어있는지, 070-700-1112의 발신번호인 착신과금서비스번호 080-111-1234의 착신번호가 070-700-1112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 후에 발신번호 변경을 승인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

다 | 예시(그림)①



예시(그림)②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 ① 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4항제4호의 착신과금서비스와 같은 세칙 제3조제21호의 대표번호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사례 1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위반

세부 ③

통신사가 자사용으로 개통한 전화번호를 가입자의 발신번호로 변경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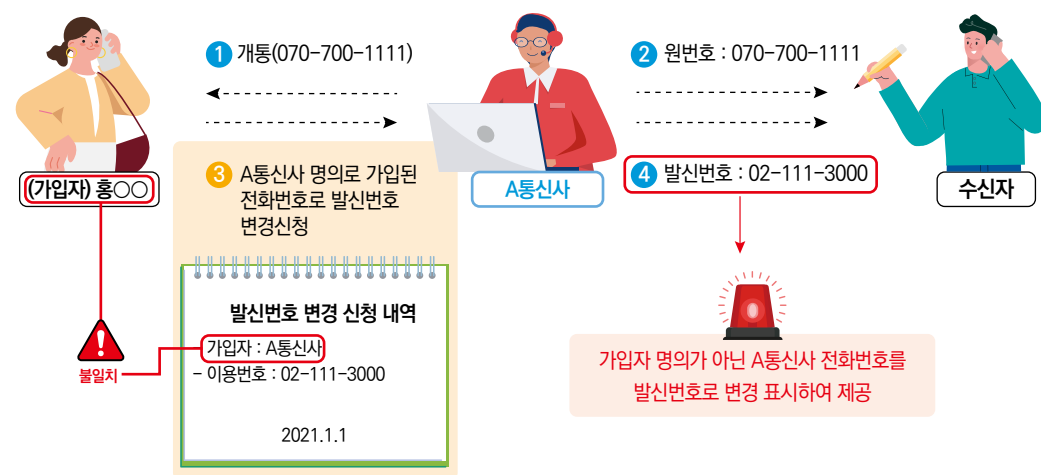
인터넷전화 사업자인 A통신사는 자사 직원들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전화 사업자로 부터 유선전화번호 100개(02-111-3000~3099)를 개통하였는데, 이 중 직원들이 사용하고 남은 유선전화번호를 자사 가입자 홍○○의 발신번호로 변경하여 주었다.

현장검사 결과 A통신사는 자사 가입자 홍○○의 인터넷전화(070-700-1111) 발신번호 변경 시 가입자 명의가 다름에도 A통신사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02-111-3000)로 변경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발신번호 변경 시에는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가입한 유선전화(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가입자 홍○○의 명의가 아닌 타인(A통신사)의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경을 승인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 ① 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사례 1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위반

세부 ④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070번호를 미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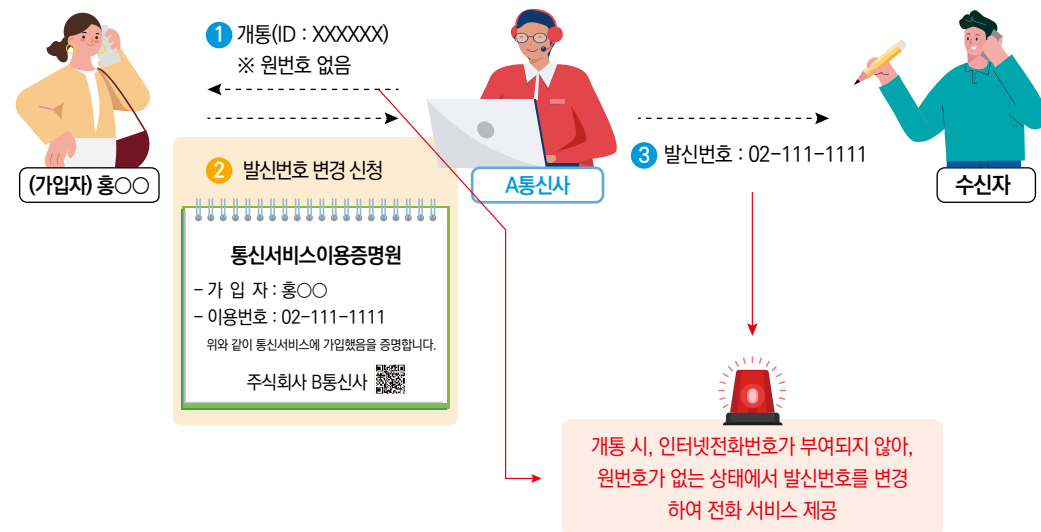
가 | 검사사례

인터넷전화 사업자인 A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인 홍○○에게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전화 번호가 아닌 ID를 부여하였다. 이후, A통신사는 가입자 홍○○로부터 변경하고자 하는 전화번호(02-111-1111)의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수령하여 발신번호 변경을 승인하였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발신번호 변경 시에는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가입한 유선전화(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인터넷전화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시내전화로 발신번호 변경을 승인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 ① 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사례 1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위반

세부 ⑤

정당한 사유 외, 발신번호를 휴대 전화번호로 변경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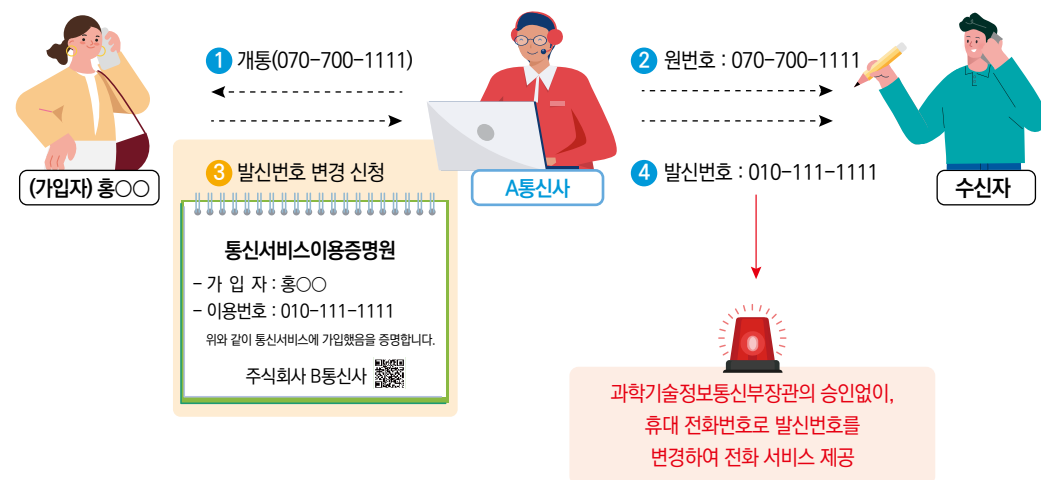
인터넷전화 사업자인 A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인 홍○○로부터 A통신사에서 개통한 인터넷전화(070-700-1111)의 발신번호를 010-111-1111로 변경한다는 신청을 받았다. 이에 A통신사는 가입자 홍○○로부터 변경하고자 하는 전화번호(010-111-1111)의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수령하여 발신번호 변경을 승인하였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발신번호 변경 시에는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가입한 유선전화(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휴대 전화번호로 변경하였음.

또한, 고시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는데, 본 사례는 승인을 받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 ① 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6.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사례
2

번호 변경 위반

세부 ① 기 계약된 가입자 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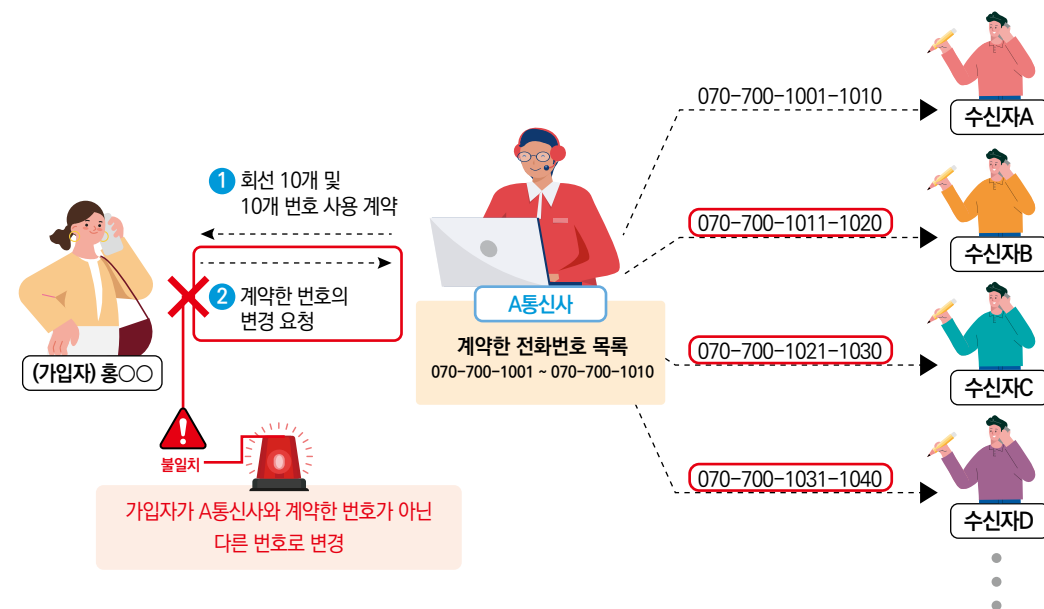
인터넷전화 사업자인 A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인 홍○○과 인터넷전화 10개 회선 및 10개 번호(070-700-1001~1010)로 개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현장검사 결과 홍○○의 전화번호 변경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이 사용하는 번호는 계약한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070-700-1011~1020)인 것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홍○○의 발신번호를 계약한 번호 이외의 번호로 변경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을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사례
2

번호 변경 위반

세부 ② 가입자 번호 변경 시 신청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미보관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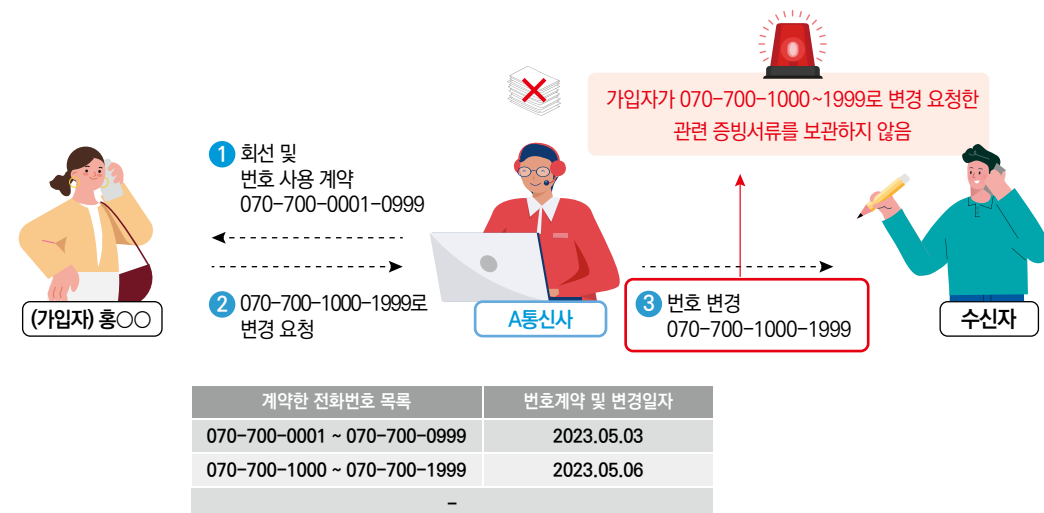
인터넷전화 사업자인 A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인 홍○○과 인터넷전화 1,000개 회선 및 1,000개 번호인 070-700-0001~0999로 개통 계약을 체결하였다. 3일 후에 A통신사는 홍○○의 요청에 의해 070-700-0001~0999 번호를 070-700-1000~1999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현장검사 결과 A통신사는 홍○○의 요청에 따라 번호를 변경하면서 번호 변경 신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나,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가입자 홍○○의 전화번호를 변경해주면서 번호 변경 신청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16조의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등을 통해 이용자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처분 근거법령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3KISA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전화번호 미차단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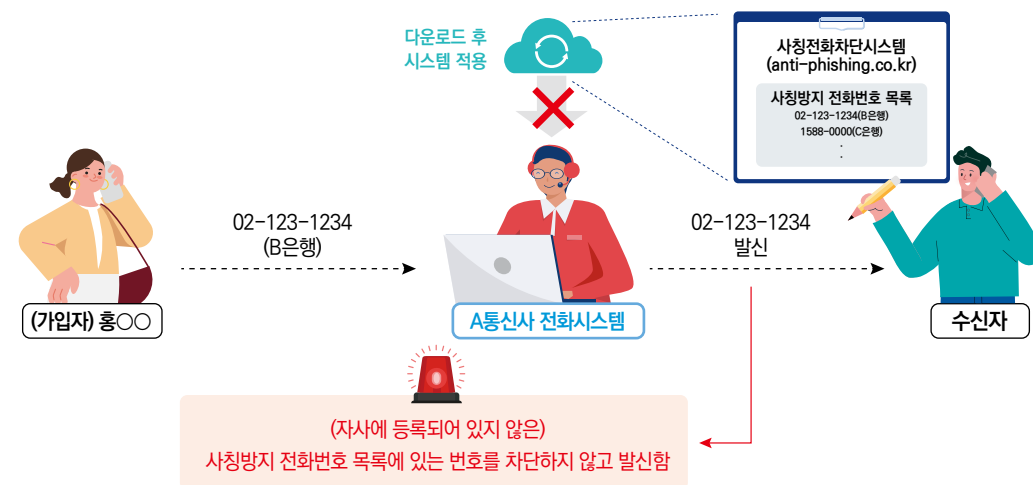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 A의 가입자 홍○○가 02-123-1234로 발신번호 변작하여 A통신사의 전화시스템을 통해 전화를 발신하였다. A통신사는 KISA 사칭전화차단시스템에 B은행의 전화번호 02-123-1234가 등록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화를 차단하지 않고 발신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1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르면 KISA에서 제공하는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전화번호의 전화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가입자 홍○○가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차단 대상인 발신번호로 변작하여 발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화를 차단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1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차단)

- ①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국외 통신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되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전화의 발신번호가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전화의 전달을 지체 없이 차단하여야 한다.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4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등 서류 발급 미흡

세부 ①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미흡

가 | 검사사례

전화사업자인 A통신사는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이용 중인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발급을 원하는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A통신사는 현재 이용 중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전화번호 조회 후, 고객이 요청한 이메일주소로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현장검사 결과 A통신사는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발급 시 발급 신청자가 가입자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발급 시에는 이용자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가입자 홍○○ 본인이 맞는지 본인확인 절차 없이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을 발급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이용자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2.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3.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종류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이용증명원을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처분 근거법령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4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등 서류 발급 미흡

세부 ② 이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서류 발송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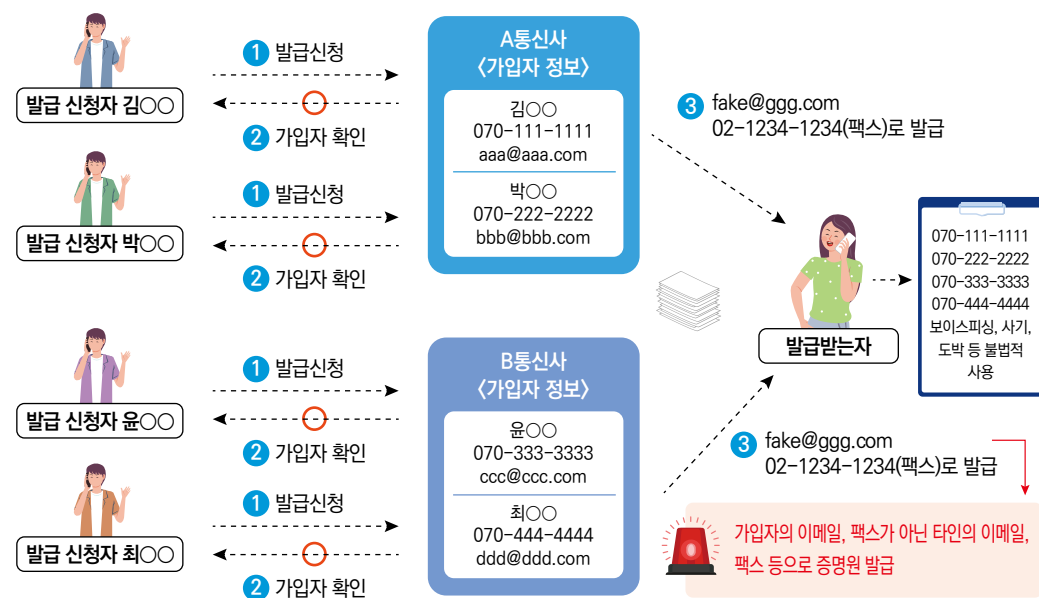
전화사업자인 A통신사는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이용 중인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을 원하는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A통신사는 고객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통해 고객 여부를 확인한 뒤 고객이 요청한 이메일주소로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현장검사 결과 A통신사가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 시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서로 다른 발급 신청자임에도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다량의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발급 시에는 이용자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가입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발급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이용자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2.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3.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종류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이용증명원을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처분 근거법령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4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등 서류 발급 미흡

세부 ③ 발급자 정보 누락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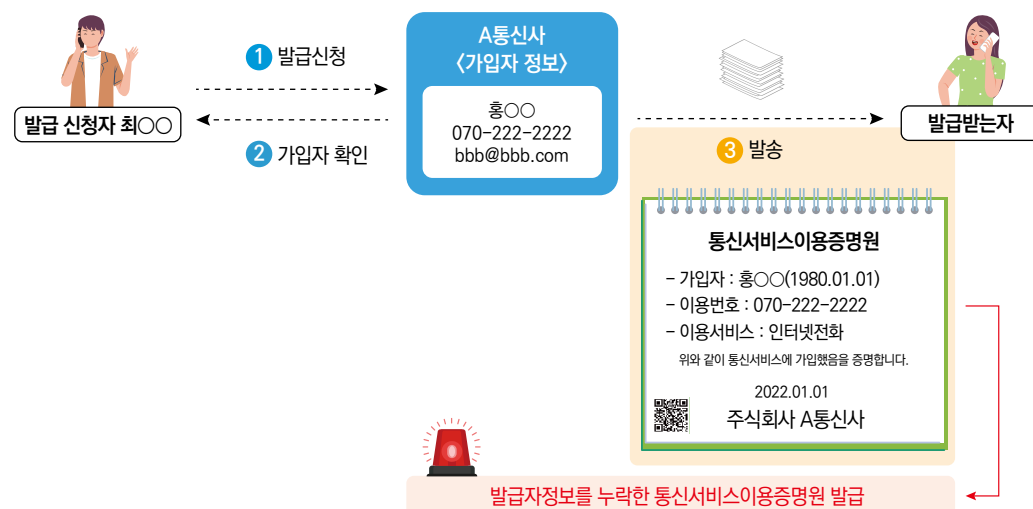
전화사업자인 A통신사는 고객이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후 자사 양식에 맞춰 발급하고 있다. 이에 A통신사는 고객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통해 고객 여부를 확인 한 뒤 고객이 요청한 이메일주소로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현장검사 결과 A통신사가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 시 발급한 담당자 정보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 시에는 사업자명, 성명, 통신서비스의 종류 등 필수 항목 5가지를 기재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이 중 일부 항목을 누락한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발급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이용자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2.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3.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종류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이용증명원을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처분 근거법령

제104조(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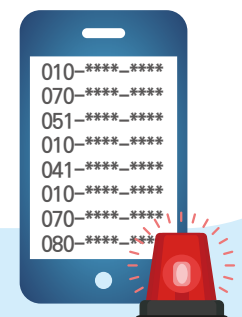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문자

- 사례1 발신번호 사전등록 미조치
- 사례2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 미흡
- 사례3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 본인확인 미흡
- 사례4 KISA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전화번호 미차단
- 사례5 증빙자료 미관리
- 사례6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미삽입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사례 1

발신번호 사전등록 미조치

세부 ①

인터넷문자발송사이트에서 발신번호 사전등록 없이 서비스 제공

가 | 검사사례

A문자중계사업자는 인터넷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문자발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검사 결과, A문자중계사업자의 인터넷문자발송사이트에서 발신번호 입력란(보내는 사람 전화번호)에 아무 번호나 입력해도 발신번호로 표시되어 문자가 전송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인터넷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는 이용자로부터 신청 받아 등록하고,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해야 하나, 이 사례에서 A문자중계사업자는 발신번호를 신청 받지 않고, 이용자가 임의로 입력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 ②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자사의 이용자로부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신청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발신번호 사전등록 미조치

세부 ② 자격을 상실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대상 미조치

가 | 검사사례

A문자중계사업자는 자사의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인 (주)△△이 위법한 문자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KISA로부터 2022년 1월 28일 받아, 이를 근거로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처리하여 인터넷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검사 결과, 2022년 2월 10일 (주)△△의 계정이 도용되어 스팸이 발송되었으며, A문자중계사업자 또한 이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르면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고객 중 공공기관이거나 위법한 문자 발송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처리해야 하나, 이 사례에서 A문자중계사업자는 (주)△△이 위법한 문자 발송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계속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예외 처리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제식 2]
위법한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 확인서

발행번호	장소	대표자 성명
신청인	인계중계사업자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명	인계중계사업자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명
사설문자발송 장비(이름)	대표자 성명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명
주소지	주소지	주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사에서 신청한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에 대해서 「사기, 도박, 불법
채팅 등」 성범죄 등 위법한 행위목적의 광고성정보를 담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확인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 결과」를
확인합니다.

□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력이 있음
□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력이 없음

※ 확인 사항 ※
본 확인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문자」 신고된 것 중 공개정보로 알려진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신고 또는 고발고소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확인서를 받은 신청자가 위법한 행위목적의 광고성정보를 담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는 사용자라도, 그 이후에 위법한 행위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문자발송사업자로부터 해당 이용자에 대해 사실조사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반복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2.1.28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과인생략]

(2022.1.28)
(주)△△ 위법한 문자
발송 사실 없음



(2022.2.10)
위법한 문자
발송 사실 확인



(2022.8.15 현재)
사전등록 예외 고객으로
계속 처리

-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대상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조치사항이 별도 없는 경우

이용자명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처리 일자	KISA 신고내용	변작· 스팸발송여부	변작·스팸발송 인지시점	현재 조치사항 (2022. 8. 15)
(주)△△	2022. 1. 28	허위 결제	계정 도용	2022. 2. 10	없음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처리로 동일)
순순(주)	2018. 6. 1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발송	2020. 2. 12	없음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처리로 동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대리인, 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 등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을 구축·운영하는 사설문자발송 장비 이용자가 사기, 도박, 불법의약품 및 성매매알선 등 그 내용이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확인받은 경우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4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1

발신 번호 사전등록 미조치

세부 ③ 자격 없는 가입자를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처리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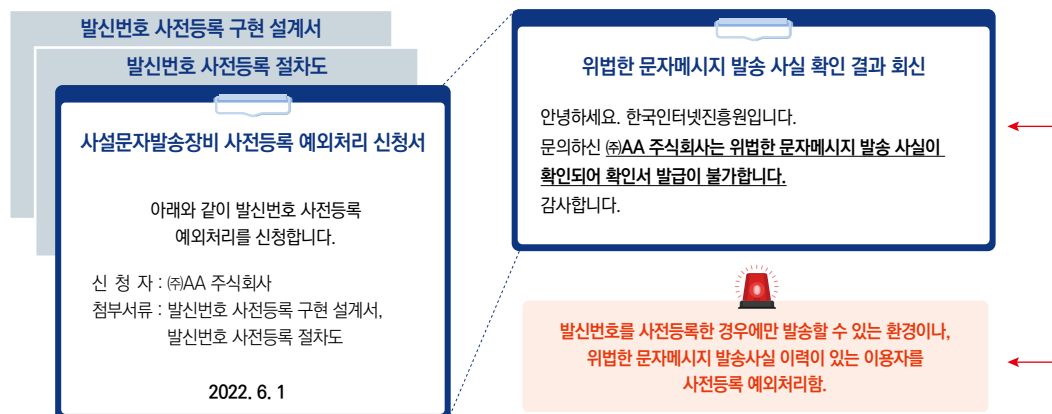
A문자중계사업자는 자사의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인 (주)AA주식회사와 (주)BB주식회사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처리하여 인터넷문자발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현장검사 결과, (주)AA주식회사는 자체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관련 서류(구현 설계서, 절차도)만 있고, KISA의 위법한 문자메시지 발송사실 확인서는 없었다. (주)BB주식회사는 KISA의 위법한 문자메시지 발송사실 확인서만 있고, 자체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관련 서류는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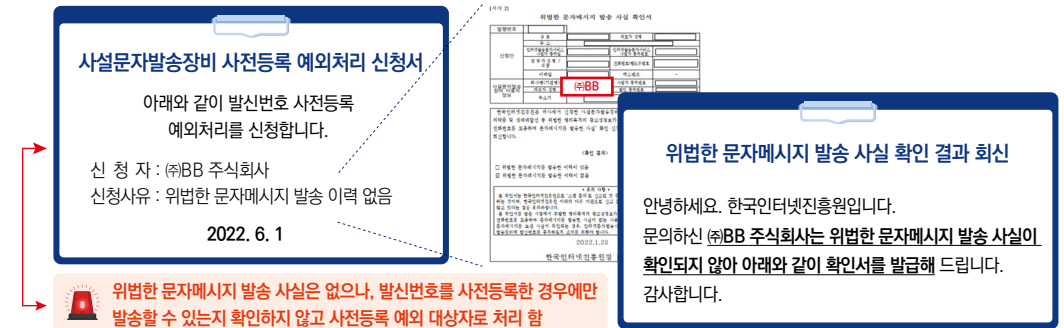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고객 중 ①자체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시스템 구축·운영하며, ②위법한 문자 발송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처리해야 하나, 이 사례에서 (주)AA주식회사와 (주)BB주식회사는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처리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예외 처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①



예시(그림)②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 ④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을 구축·운영하는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가 사기, 도박, 불법의약품 및 성매매알선 등 그 내용이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확인받은 경우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2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 미흡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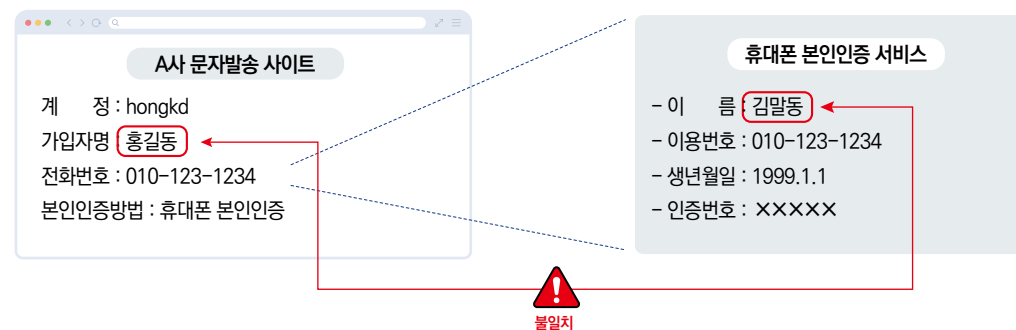
A문자중계사업자는 자사의 인터넷문자발송사이트에서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휴대폰본인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가입자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였다.

현장검사 결과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명의가 홍길동이고, 휴대폰본인인증한 명의자가 홍길동이 아닌, 김말동이어도 홍길동을 회원 가입하도록 처리하였다. 또한, 회원가입 시 이용자 명의는 AA기업에 본인인증 명의자는 김숙자인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김숙자가 아닌 이철수임에도 추가 재직증명서 확인 없이 회원 가입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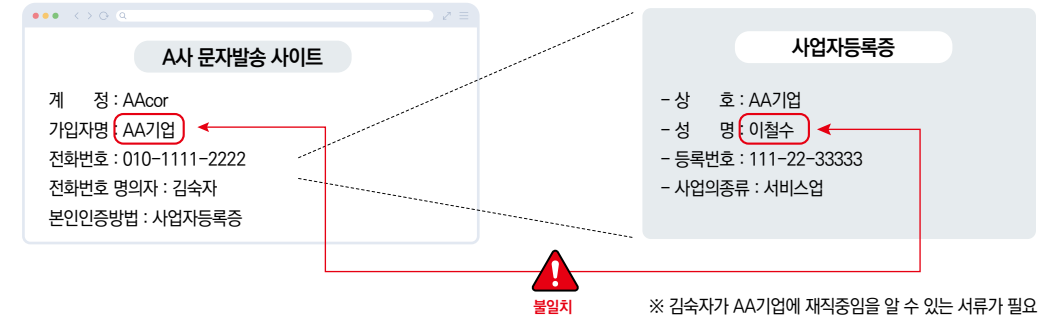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 각 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제1항에 따르면 인터넷문자발송사이트에 회원가입 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해야 하나, 이 사례에서 A문자중계사업자는 회원가입자 홍길동과 김말동의 휴대폰본인인증 명의자가 다르거나, 회원 가입자 AA기업의 본인인증 명의자 김숙자와 AA기업과의 재직여부 등 관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회원 가입 처리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을 위반

다 | 예시(그림)①



예시(그림)②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①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처분 근거법령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3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 본인확인 미흡

세부 ① 명의자가 다른 발신번호를 등록 승인

가 | 검사사례

문자재판매사업자인 A사업자는 자사 가입자인 김○○로부터 인터넷문자 발송을 위해 010-1111-1111을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등록 신청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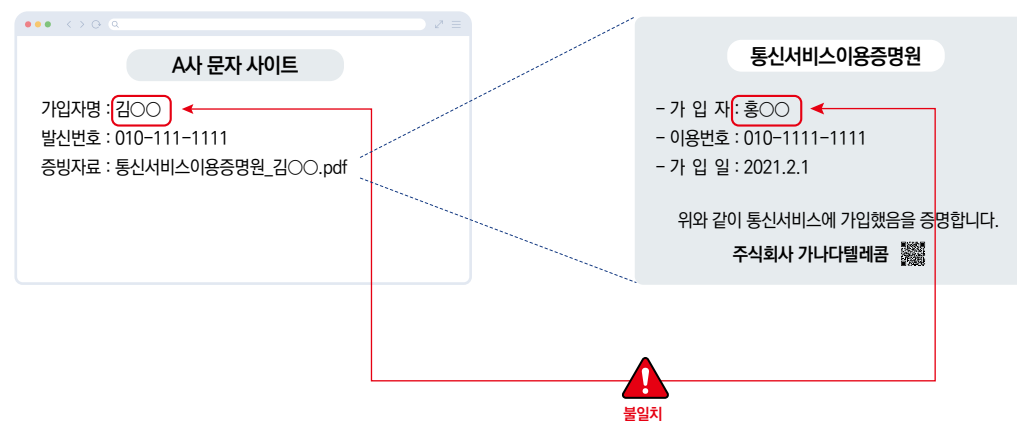
이에 A사업자는 가입자 김○○로부터 등록하고자 하는 전화번호인 010-111-1111의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수령하여 발신번호 등록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현장검사 결과 김○○가 제출한 010-111-1111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상의 명의자는 홍○○로, 가입자인 김○○와 발신번호 명의자인 홍○○가 다름에도 발신번호 등록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1호에 따르면 발신번호 등록 시에는 발신번호의 명의가 가입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사업자는 가입자 김○○의 명의가 아닌 타인(홍○○)의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등록을 승인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 ③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발신번호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발신번호의 명의가 이용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여부

처분 근거법령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3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 본인확인 미흡

세부 ②

법인·단체 가입자와 발신번호 명의자가 다름에도 발신번호 등록

가 | 검사사례

문자재판매사업자인 A사업자는 자사의 법인 가입자인 B주식회사로부터 인터넷문자 발송을 위해 1588-xx○○을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등록 신청을 받았다.

이에 A사업자는 가입자 B주식회사로부터 등록하고자 하는 전화번호인 1588-xx○○의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과 문자발송 담당자의 재직증명서를 수령하여 발신번호 등록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현장검사 결과 B주식회사가 제출한 1588-xx○○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상의 명의자는 홍길동이고 재직증명서로 확인된 담당자는 김말동으로, 가입자인 B주식회사와 발신번호 명의자인 홍길동의 관계를 알 수 없음에도 발신번호 등록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1호에 따르면 발신번호 등록 시에는 발신번호의 명의가 가입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사업자는 가입자 B주식회사의 명의가 아닌 타인(홍○○)의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등록을 승인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A사 문자 사이트

가입자명 B주식회사
발신번호 : 1588-XX00
증빙자료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pdf
재직증명서.pdf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가입자 홍길동
- 이용번호 : 1588-XX00
- 가입일 : 2020.1.1
위와

재직증명서

성명 김말동
재직기간 : 2015.1.1~현재
위와 같이 재직함을 증명합니다.
2021. 1. 1
B주식회사 대표

※ '홍길동'이 'B주식회사' 재직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 ③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발신번호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발신번호의 명의가 이용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여부

처분 근거법령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3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 본인확인 미흡

세부 ③

본인확인 유효성이 없는 인증수단으로 발신번호 등록

가 | 검사사례

문자재판매사업자인 A사업자는 자사 가입자로부터 인터넷문자 발송을 위해 010-1234-1234를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등록 신청을 받았다.

이에 A사업자는 전화번호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010-1234-1234에 인증번호 6자리(123123)가 가입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잠시후 가입자가 인증번호 확인란에 입력한 123123이 확인되어 발신번호 등록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현장검사 결과 A사업자는 010-1234-1234의 명의자를 확인하지 않고 SMS 인증을 사용하여 발신번호 등록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1호에 따르면 발신번호 등록 시에는 발신번호의 명의가 가입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사업자는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는 본인인증 수단(SMS)으로 등록된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등록 승인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 ③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발신번호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발신번호의 명의가 이용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여부

처분 근거법령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3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 본인확인 미흡

세부 ④

사설문자발송장비 운영담당자에 의한 발신번호 등록

가 | 검사사례

문자재판매사업자인 A사업자는 자사의 가입자인 주식회사ABC로부터 사설문자발송장비에서 인터넷 문자 발송을 위해 02-1111-1111을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등록 신청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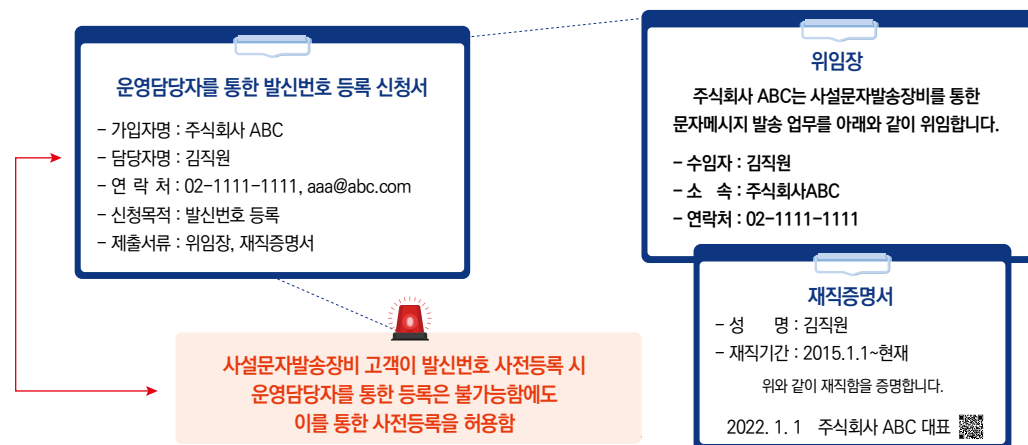
이에 A사업자는 가입자 주식회사ABC로부터 '운영담당자를 통한 발신번호 등록 신청서' 및 주식회사ABC의 문자발송 업무를 김직원이 담당한다는 위임장, 문자발송 업무 담당자 김직원의 재직증명서를 수령하여 02-1111-1111 발신번호 등록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현장검사 결과 A사업자는 사설문자발송장비 운영담당자를 통한 발신번호 등록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ABC가 신청한 발신번호 등록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1호에 따르면 발신번호 등록 시에는 발신번호의 명의를 가입자의 명의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사업자는 사설문자발송장비 운영담당자를 통해 등록된 전화번호의 명의를 확인하지 않고 발신번호로 등록 승인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 ③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발신번호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발신번호의 명의를 이용자의 명의로 일치하는지 여부

처분 근거법령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 본인확인 미흡

세부 ⑤ 문자 발송 업무 위임 시 사전 승낙 여부 확인 미흡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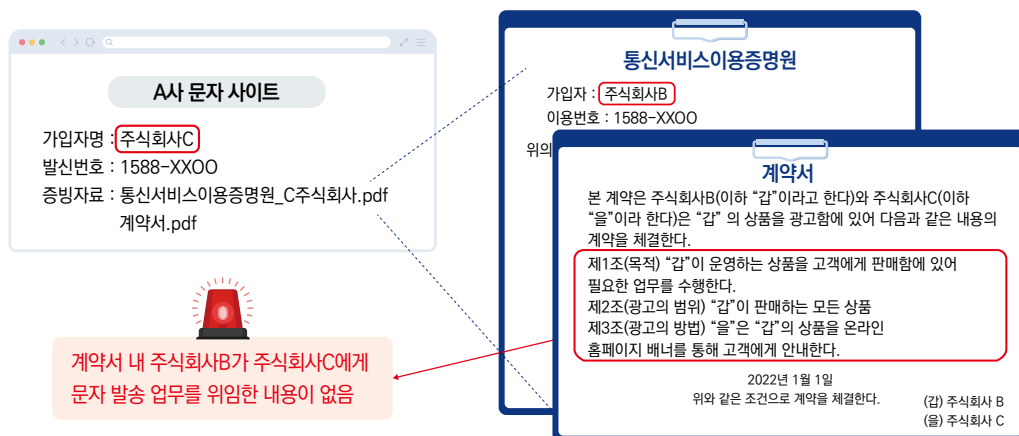
문자재판매사업자인 A사업자는 자사의 가입자인 주식회사C로부터 주식회사B의 전화번호로 인터넷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1588-xx○○를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등록 신청을 받았다. 이에 A사업자는 가입자 주식회사C로부터 등록하고자 하는 전화번호인 1588-xx○○의 통신서비스이용 증명원과 위수탁계약서를 수령하여 발신번호 등록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현장검사 결과 주식회사C가 제출한 위수탁계약서에는 주식회사B가 주식회사C에게 1588-xx○○의 발신번호 등록 및 문자발송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C의 계정에 주식회사B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등록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2호에 따르면 발신번호 등록 시에는 발신번호의 명목이 가입자의 명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화번호 명목자로부터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낙을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사업자는 가입자 주식회사C로부터 수령한 위수탁계약서 내에 발신번호 등록 및 문자발송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이 가능하다 판단하고 타사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등록 승인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 ③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발신번호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전화번호의 명의자로부터 그 전화번호를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낙을 얻었는지 여부

처분 근거법령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4

KISA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전화번호 미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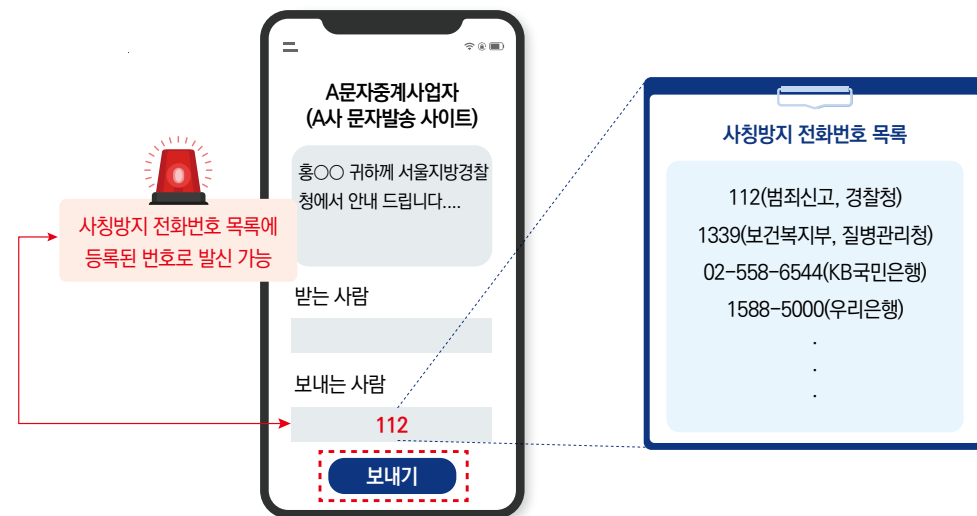
가 | 검사사례

문자중계사 A의 가입자 홍○○가 112로 발신번호 변작하여 A통신사의 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해 문자를 발신하였다. A통신사는 KISA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경찰청의 전화번호 112가 등록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를 차단하지 않고 발신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1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문자중계사업자는 KISA에서 제공하는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전화번호의 문자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가입자 홍○○가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차단 대상인 발신번호로 변작하여 발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발신을 차단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1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예시(차단시험)

[○: 차단됨, ×: 차단안됨]

발신번호 수신번호	1301 (대검찰청)	112 (범죄신고, 경찰청)	133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1332 (금융감독원)	02-558-6544 (KB국민은행)	1588-5000 (우리은행)	010-7xxx-yyy (개인 휴대전화)
검사원 테스트폰1	×	×	×	×	×	×	×
검사원 테스트폰2	×	×	×	×	×	×	×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차단)

- ① 문자중계사업자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지체 없이 차단하여야 한다.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5

증빙자료 미관리

세부 ①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 증빙자료 미보관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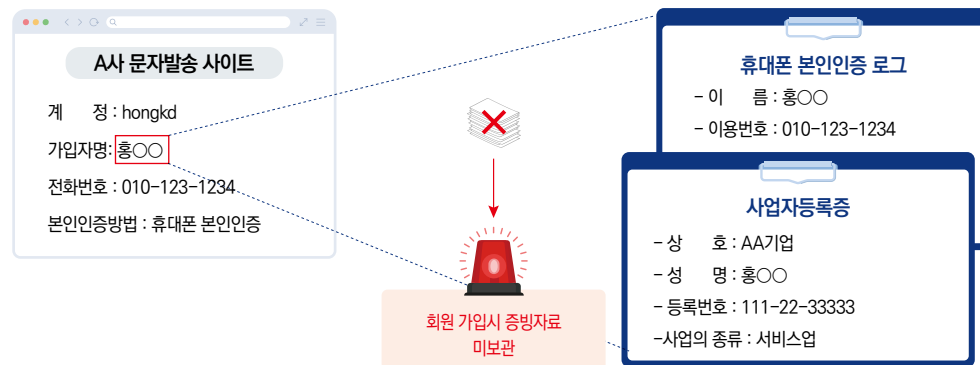
문자재판매사인 A사업자는 자사의 인터넷문자발송사이트에서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휴대폰본인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가입자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였다.

현장검사 결과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폰본인인증 로그 자료, 사업자등록증 등의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6항에 따르면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나, 이 사례에서 A사업자는 홍○○을 가입시키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 ⑥ 문자중계사업자들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처분 근거법령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5

증빙자료 미관리

세부 ②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 본인확인 증빙자료 미보관

가 | 검사사례

문자재판매사업자인 A사업자는 자사 가입자인 김○○로부터 인터넷문자 발송을 위해 010-1111-1111을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등록 신청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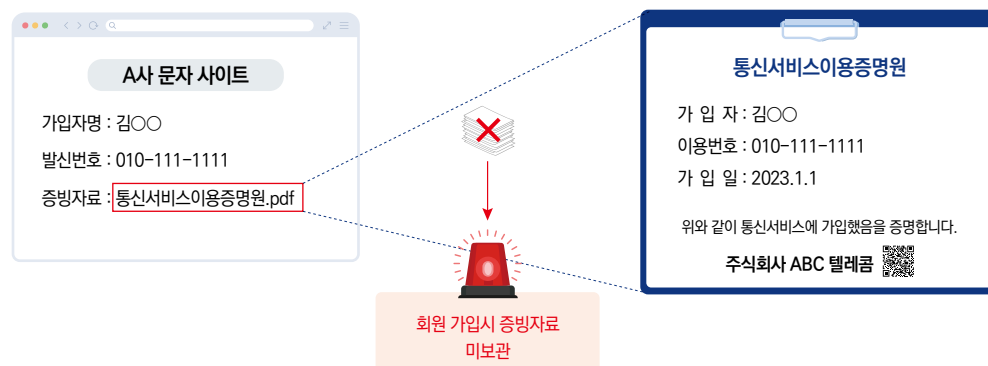
이에 A사업자는 가입자 김○○로부터 등록하고자 하는 전화번호인 010-111-1111의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수령하여 발신번호 등록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현장검사 결과 김○○이 제출한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6항에 따르면 발신번호 사전 등록 시 발신번호 명의가 이용자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나, 이 사례에서 A사업자는 김○○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 ⑥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처분 근거법령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5

증빙자료 미관리

세부 ③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처리 시 증빙자료 미보관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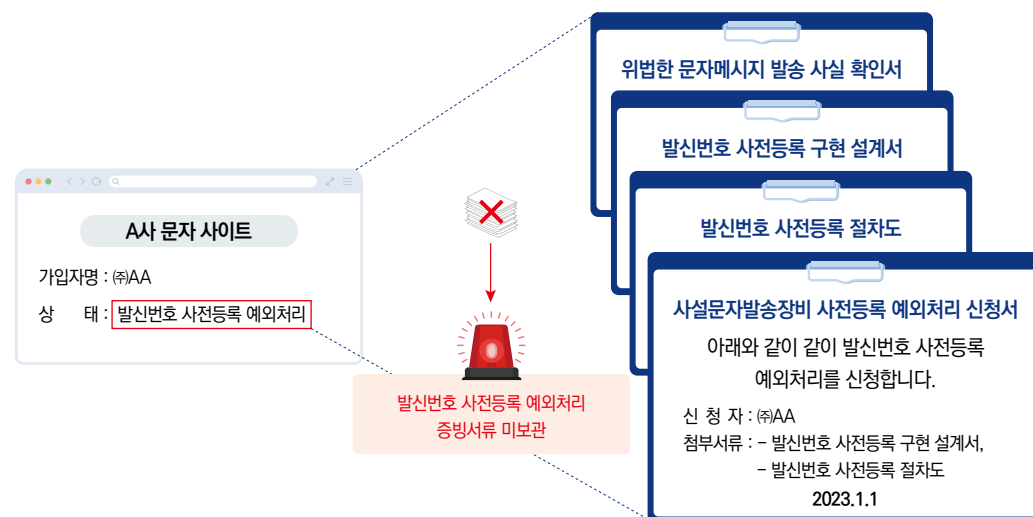
문자재판매사인 A사업자는 자사의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인 (주)AA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처리하여 인터넷문자발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현장검사 결과, (주)AA는 발신번호 사전등록 신청서, 자체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관련 서류(구현 설계서, 절차도), KISA의 위법한 문자메시지 발송사실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6항에 따르면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에게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처리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보관해야 하나, 이 사례에서 A사업자는 (주)AA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처리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 ⑥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처분 근거법령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6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미삽입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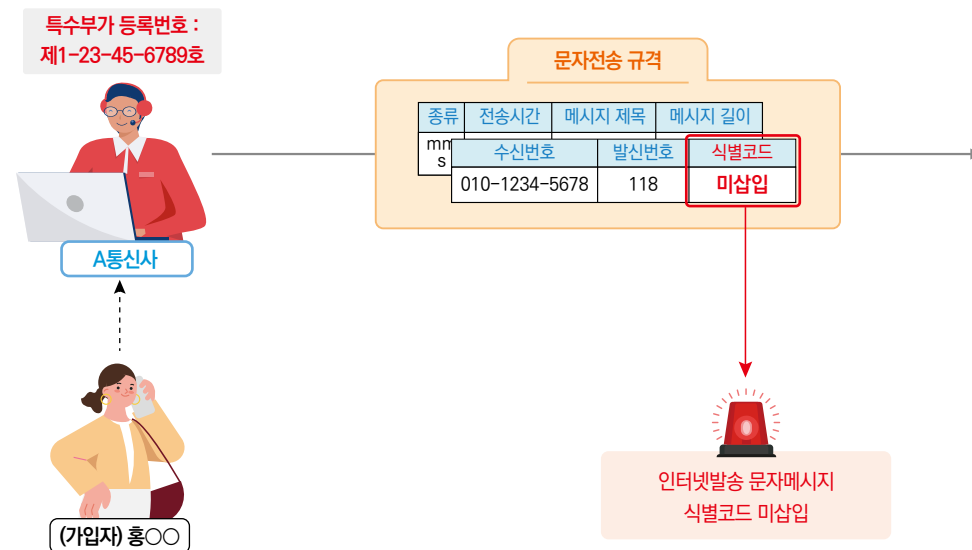
문자재판매사업자인 A사업자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송하는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게 식별코드를 삽입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었다.

현장검사 결과 A사업자는 상위사업자로부터 식별코드가 표기된 문자전송 규격을 받았으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식별코드를 삽입하는 기능을 개발하지 않아, 식별코드를 적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4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시 특수한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번호 9자리를 식별코드로 삽입해야 하나, 이 사례에서 A사업자는 최초 문자 발송 통신사임에도 식별코드를 삽입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4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삽입)

- ① 문자중계사업자와 문자재판매사업자(이하 “문자중계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할 때 부여받은 번호를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로서 삽입하여야 한다.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미삽입에 대하여 2023년 12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행정처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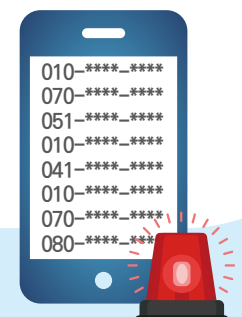


공통

사례1 국제전화 식별번호 미표시

사례2 거짓표시 전화번호 신고 처리 위반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사례
1

국제전화 식별번호 미표시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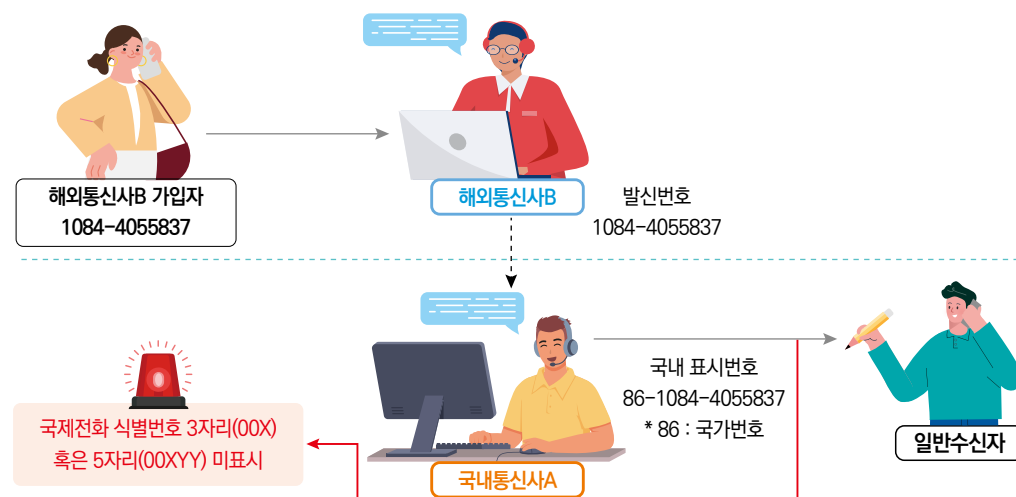
기간통신사업자인 국내통신사A는 해외통신사B의 가입자가 1084-4055837 전화번호로 발신한 전화의 발신번호 앞에 국가번호(86)만 삽입하여 국내 수신자에게 발신번호가 86-1084-4055837인 전화를 전달하였다.

현장검사 결과 국내통신사A는 해외통신사B로부터 전달받은 전화의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00X)를 삽입하지 않고 국내 수신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2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외 통신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를 삽입하여야 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국내통신사A는 해외통신사B로부터 전달받은 전화가 국외 통신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3자리(00X) 또는 5자리(00XYY)를 삽입하지 않고 국내 수신자에게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2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6조(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국외 통신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를 삽입하여야 한다.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2

거짓표시 전화번호 신고 처리 위반

세부 ①

KISA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건 미처리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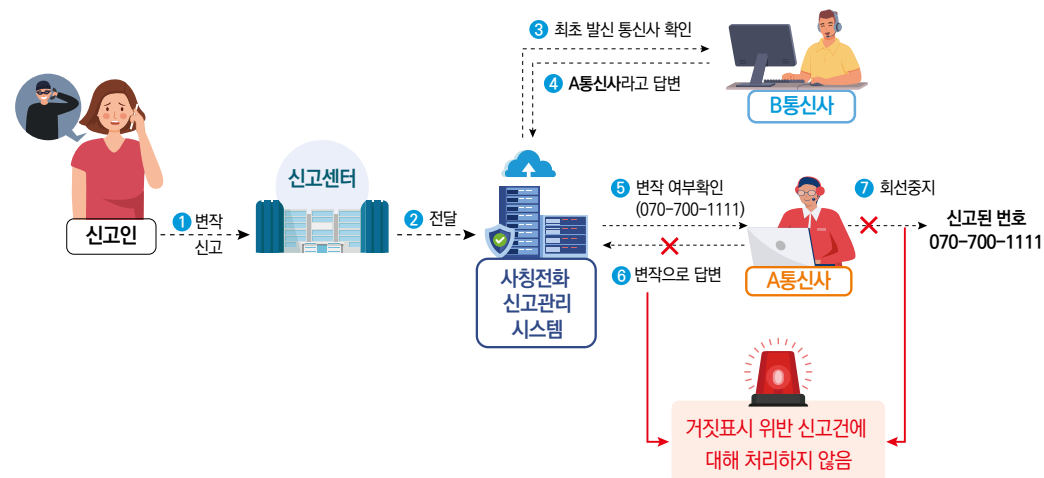
신고인 홍○○은 발신번호 변작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아 KISA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해당 전화번호(070-700-1111)를 신고하였다. KISA는 접수된 신고 건을 신고인 홍○○가 이용 중인 B통신사에게 확인 요청하였으며, B통신사는 해당 전화가 A통신사를 통해 발신된 것을 확인 후 답변하였다.

현장검사 결과 A통신사는 자사에게 이관된 신고건(발신번호 070-700-1111)에 대해 어떠한 확인(자사 가입자 여부, 변작여부 등) 및 조치(회선 중지, 답변 등)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 및 제84조의2제4항제3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거짓표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발송계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KISA가 확인 요청한 신고건에 대해 어떠한 확인 및 조치를 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 및 제84조의2제4항제3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제5조, 제7조 또는 제11조의 조치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인지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거짓표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인터넷발송 문자 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발송계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2

거짓표시 전화번호 신고 처리 위반

세부 ②

KISA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된 해당 회선 미중지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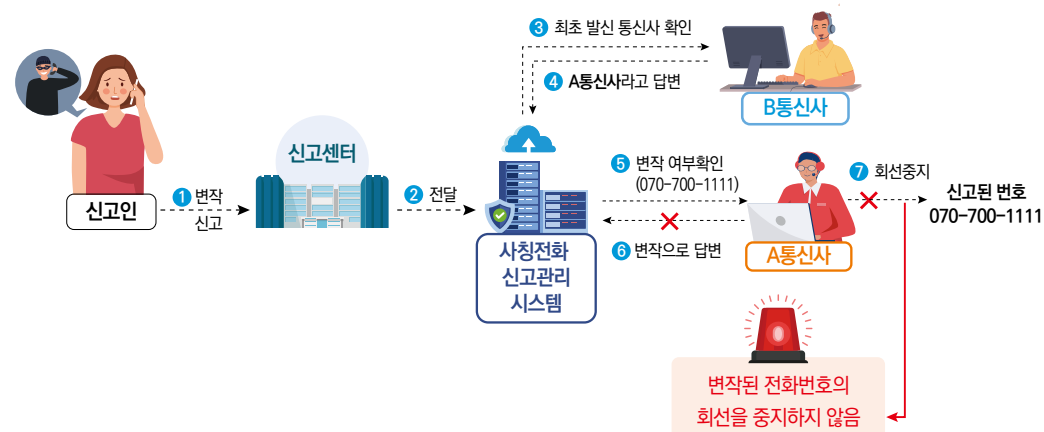
신고인 홍○○은 발신번호 변작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아 KISA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해당 전화번호(070-700-1111)를 신고하였다. KISA는 접수된 신고 건을 신고인 홍○○가 이용 중인 B통신사에게 확인 요청하였으며, B통신사는 해당 전화가 A통신사를 통해 발신된 것을 확인 후 답변하였다.

현장검사 결과 A통신사는 신고건(발신번호 070-700-1111)에 대해 자사 가입자가 해당 전화를 발신하였고 그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가입자의 해당 회선을 중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거짓표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발송계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KISA가 확인 요청한 신고건(발신번호 070-700-1111)에 대해 자사 고객이 발신번호를 거짓 표시하여 발신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선을 중지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제5조, 제7조 또는 제11조의 조치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인지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거짓표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인터넷발송 문자 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발송계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84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사례
2

거짓표시 전화번호 신고 처리 위반

세부 ③

KISA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수된 변작처리 답변 미제출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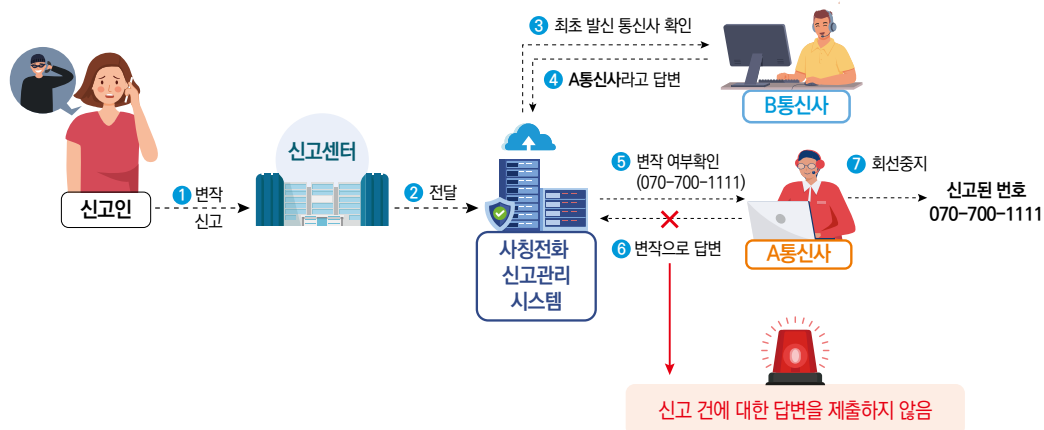
신고인 홍○○은 발신번호 변작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아 KISA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해당 전화번호(070-700-1111)를 신고하였다. KISA는 접수된 신고 건을 신고인 홍○○가 이용 중인 B통신사에게 확인 요청하였으며, B통신사는 해당 전화가 A통신사를 통해 발신된 것을 확인 후 답변하였다.

현장검사 결과 A통신사는 신고건(발신번호 070-700-1111)에 대해 자사 가입자가 해당 전화를 발신하였고,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확인하여 해당 회선을 중지하였으나 KISA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답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계정 중지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KISA가 확인 요청한 신고건(발신번호 070-700-1111)에 대해 자사 고객이 발신번호를 거짓 표시하여 발신한 것을 확인하여 해당 회선을 일시 중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답변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4항 제3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③ 변작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변작된 전화번호의 발신을 차단 또는 정정하여 발송하는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계정 중지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처분 근거법령

제92조(시정명령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4조의2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례
2

거짓표시 전화번호 신고 처리 위반

세부 ④

KISA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한 답변처리 미흡

가 | 검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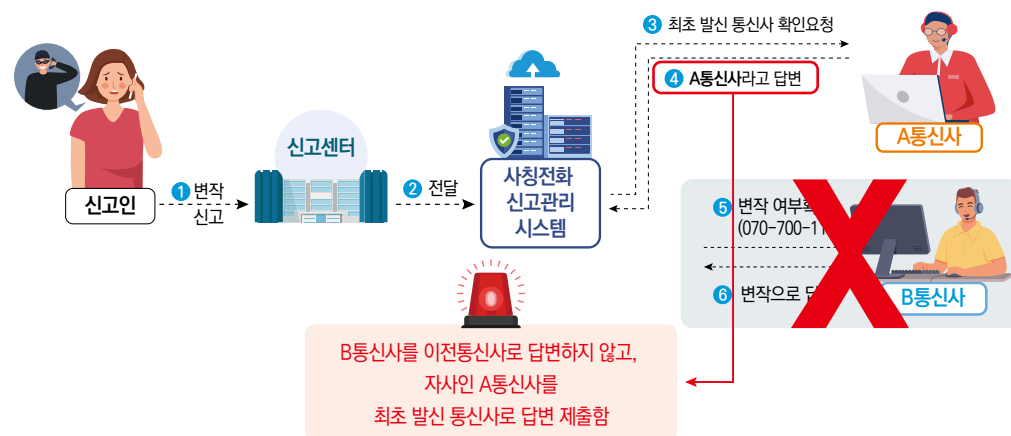
신고인 홍○○은 발신번호 변작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아 KISA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해당 전화번호(070-700-1111)를 신고하였다. KISA는 접수된 신고 건을 신고인 홍○○가 이용 중인 A통신사에게 확인 요청하였으며, A통신사는 확인 후 자사에서 발신된 전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현장검사 결과 A통신사는 해당 전화가 자사가 아닌 B통신사에서 발신된 전화임을 확인하였으나, KISA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B통신사가 아닌 자사 가입자가 발신한 전화라고 잘못된 답변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4항제2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표시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 A통신사는 KISA가 확인 요청한 신고건(발신번호 070-700-1111)에 대해 B통신사에서 발신된 전화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B통신사명)를 제출하지 않고 잘못 답변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4항제2호를 위반

다 | 예시(그림)



라 | 관련법령

위반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거짓표시된 전화번호 확인·차단 관련 자료의 제출 등)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표시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분 근거법령

제104조(과태료)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전화번호 거짓표시 검사

주요 위반사례집

-
- 발 행 일 2023년
 - 발 행 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주 소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7
Tel. 1433-25
 - 디자인·인쇄 (사)아름다운사람들
Tel. 02-6948-9650
-